

## 2018년 다중이용업소법 정오표(18.5.13)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60 (1)② (규칙 개정 18.3.21)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p 60 (1)②㉔ (규칙 개정 18.3.21)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p 61 ④ p 257 2.라	액정비전 셋트 멀티비전 셋트 비디오셋트	삭제
p 65 (2)① (규칙 개정 18.3.21)	출입구로부터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p 65 (2)① (규칙 개정 18.3.21)	경우에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p 65 (2)③㉑ (규칙 개정 18.3.21)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불연재료로
p 66 (3)②㉑㉒ (규칙 개정 18.3.21)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불연재료로
p 66 (3)②㉓ 단서 추가 p 257 2) (규칙 개정 18.3.21)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p 78 9)②㉔ (규칙 개정 18.3.21)	소방경 이상 소방위 이상	소방위 이상 소방장 이상
p 93 17번 M (규칙 개정 18.3.21)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p 93 17번 해설 (규칙 개정 18.3.21)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p 118 (2)	둘 이상의	둘 이상에
p 120 (2)①	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p 126 5번	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p 154 (2)②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p 156 평가대행자의 등록 1)②	금지산·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160 7번	A등급(20 미만)	A등급(위험수준 20 이하)
p 186, p 264 도표 교육용기자재의 종류		1,3,4,5 삭제 2. 빔프로젝트 1개(스크린 포함)
p 256 1 나(1)(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p 257 2.비상구 가 1)	출입구로부터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p 258 둘째 줄	경우에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p 258 3) 가) (규칙 개정 18.3.21)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불연재료(不燃材料)로
p 259 첫 줄 (규칙 개정 18.3.21)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불연재료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시행 2018.3.21.]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18. 3. 21, 일부개정]

## 1. 개정 이유

소방안전교육 중 수시교육 대상자 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 강사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비상구의 설치·유지 기준 중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주된 출입구의 중심부로부터의 수평거리로 계산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전에는 비상구 부속실의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에 비상구 부속실에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원활한 하자보수 이행을 위하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서식 및 세부점검표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개정 내용

- ① 소방안전교육에서 수시교육의 대상 :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맞게 위험물 자격증 명칭 수정
  - ㉠ 위험물관리기능장 → 위험물기능장
  -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 위험물관리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 ③ 소방안전교육 강사 기준 정비
  - ㉠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④ 소방안전교육에서 교육용기자재  
라. 교육용기자재

기자재명	규격	수량(단위: 개)
빔 프로젝터 (beam projector)(스크린 포함)		1
소화기(단면절개: 断面切開)	3종	각 1
경보설비시스템		1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
응급교육기자재 세트		1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		1

⑤ 비상구 설치의 위치에서 계산 기준의 명확화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

→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

⑥ 비상구 구조에서 부속실의 마감재료 :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었으나 기준을 강화하여 불연재료로 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함

⑦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의 비상구 기준

㉠ 부속실 : 준불연재료 이상에서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

㉡ 부속실에 설치된 문의 규격 : 비상구의 규격으로 하도록 하되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⑧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 교육용 기자재 기준

- |   |
|---|
| 1. 빔프로젝터 1개(스크린 포함)   |
| 2. 소화기(단면절개:断面切開) : 3종 각 1개   |
| 3. 경보설비시스템 1개   |
| 4. 스프링클러모형 1개   |
| 5.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개   |
| 6.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개   |
| 7.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개  |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 |

⑨ 서식의 개선

㉠ 별지 제7호서식(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 소방 시설공사업자란 추가

㉡ 별지 제10호서식(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추가